증권선물위원회

의결 제2026-188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 관	㈜아센디오
임직원	前공동관리인 2인, 前담당임원
외부감사인	◇◇회계법인

2. 조치내용

< 금감원 원안 >

○ ㈜아센디오
- 외부감사법상 과징금(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)
- 감사인지정 3년
- 면직권고 상당(◍◍◍)

○ 前공동관리인 ☆☆☆
- 외부감사법상 과징금(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)

○ 前공동관리인 ★★★
- 외부감사법상 과징금(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)

○ 前담당임원 ◍◍◍
- 외부감사법상 과징금(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)

○ ◇◇회계법인
- 외부감사법상 과징금(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)
-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%
-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

○ 공인회계사 ◆◆◆
-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
- 주권상장·지정회사·대형비상장 감사업무제한 1년
- 직무연수 16시간

< 수정심의·의결 >

○ ㈜아센디오
- 외부감사법상 과징금(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)
- 감사인지정 3년
- 면직권고 상당(◍◍◍)

○ 前공동관리인 ☆☆☆
- 외부감사법상 과징금(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)

○ 前공동관리인 ★★★
- 외부감사법상 과징금(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)

○ 前담당임원 ◍◍◍
- 외부감사법상 과징금(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)

○ ◇◇회계법인
- 외부감사법상 과징금(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)
-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%
-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

○ 공인회계사 ◆◆◆
-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
- 주권상장·지정회사·대형비상장 감사업무제한 1년
- 직무연수 16시간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< ㈜아센디오 >

○ **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인식**

- 회사는 손상징후가 존재하는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한 손상검토를 소홀히 하여, 관련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음

< ◇◇회계법인 >

○ **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관련 감사절차 소홀**

- 감사인은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

나. 근거법규

○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5조 등